

의안번호	제100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2월 일 (제296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12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연월일 : 2010년 12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북부출장소 규모 재조정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직급책정 연장 협의(3급,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른, 한시직급정원의 명칭변경 및 기한연장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888명 → 2,892명 (증4명) (안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398 → 1,402명 (증4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제4조 별표3)

- |        |                               |
|--------|-------------------------------|
| ○ 총 계  | 2,888명 → <u>2,892</u> 명 (증4명) |
| - 일반직  | 1,042명 → <u>1,045</u> 명 (증3명) |
| · 5급이하 | 975명 → <u>978</u> 명 (증3명)     |
| - 기능직  | 243명 → <u>244</u> 명 (증1명)     |
- ※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 ③ 한시직급정원 명칭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 (부칙 개정)

- 명칭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 바이오밸리추진단장으로 변경
- 기한 : 2010년12월31일까지 → 2012년12월31일까지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 :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추계

- 총 소요액 : **219,489,795원** 정도  
- 인건비 177,216,295원 / 물건비 9,480,000원 / 이전경비 32,793,500원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2,888명”을 “2,8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98명”을 “1,40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3227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을 “바이오밸리추진단장”으로 하고, “2010년 12월31일”을 “2012년12월31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8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98명</u></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02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부 칙(2010. 1. 1 조례 제3227호) 제3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u>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u>)의 존속 기한은 <u>2010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부 칙(2010. 1. 1 조례 제3227호) 제3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u>바이오밸리추진단장</u>)의 존속기한 은 <u>201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 계	<b>2,892</b>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b>1,045</b>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7	39	7	4	6	1
5급이하소계	<b>978</b>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7			-		
연 구 관	21			19	2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378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68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b>244</b>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집행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